

군포도시공사 제5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「군포도시공사 정관」 일부개정정관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배 재 국



2023년 10월 11일

군포도시공사 정관 제 9 호

## 군포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정관

군포도시공사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.

1. 공영·부설·개방주차장 등 주차장 관리·운영사업

제26조제1항 중 ‘선임하되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’을 ‘호선’으로 한다.

제2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, 만약 의장, 사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비상임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회를 소집한다. 이 경우 비상임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## 부 칙

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미 래 기 획 부
입 안	직 위 성 명	미 래 기 획 부 장 한 대 회
	직 위 성 명	혁 신 기 획 팀 장 성 용 현
자	담당자 성명 (전 화)	김 양 수 ( 3 9 0 - 7 6 1 4 )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6조(사업) ① (생략)</b></p> <p>② 공사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탁하여 대행 운영한다.</p> <p>1. <u>공영주차장 관리·운영사업</u></p> <p>2. ~ 5. (생략)</p> <p>6. <u>군포시청 부설주차장 관리·운영사업</u></p> <p>7. ~ 11. (생략)</p>	<p><b>제6조(사업) ① (현행과 같음)</b>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<u>공영·부설·개방주차장 등 주차장 관리·운영사업</u></p> <p>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&lt;삭제&gt;</p> <p>7. ~ 11.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26조(의장 및 소집)</b></p> <p>①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사 3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하며,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 이사 중에서 <u>선임하되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한다.</u></p>	<p><b>제26조(의장 및 소집)</b></p> <p>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호선</u>-----</p>
<p>② (생략)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③ &lt;신설&gt;</p>	<p>③ <u>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, 만약 의장, 사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비상임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회를 소집한다. 이 경우 비상임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</u></p>